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3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김소희·김상훈·주호영

인요한 • 조경태 • 김성원

신동욱 · 김예지 · 강대식

서일준 · 김선교 · 주진우

서지영 • 백종헌 • 최은석

김장겸 • 권영세 • 김용태

우재준 • 이인선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의 삶의 질"을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질"로 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은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제1조(목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시키고 <u>국민의 삶의 질</u> 을 향상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 질</u>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	3		
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			
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u>신설></u>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u>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u>		
	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		
	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		
	은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른		
	<u>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